

디지털도서관의 퍼블릭도메인 저작물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의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rvice Status of Public Domain Works in Digital Library: Focusing on the Cas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s Expired Works Service

이호신 (Hosin Lee)**

초 록

저작권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법률적인 기준이다.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종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이 연구는 실제로 도서관이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을 서비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들을 망라해서 정리하고,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김유정, 이호석, 채만식 세 명의 일제강점기 작가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의 구체적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률의 허용하는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도서 내에 포함된 다른 저작자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단위를 저작물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과 전자레코드를 활용해서 저작자의 생몰년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Copyright is a legal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cope and method of digital library service. Works with expired protection periods correspond to the public domain and can be freely used by anyone. For this reason, it is a priority consideration in digital library construction and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ctively libraries are using expired protected works for digital library services. To this e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applied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ies were first summarized, and the meaning of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was theoreticall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services for expired works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works of three Japanese colonial era writers, Kim Yoo-jung, Lee Hyo-seok, and Chae Man-sik, to check the specific service status of expired works. It reveals th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not fully utilizing the scope of the law, and that this situation is linked to the rights of other authors included in the book. Based on these results,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service unit to focus on copyrighted works and to use authority records to systematize the management of authors' death years.

키워드: 디지털도서관,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 국립중앙도서관
digital library, expired works, public domain, copyright, National Library of Korea

*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부교수(leehs@hansung.ac.kr)

■ 논문접수일자: 2023년 8월 17일 ■ 최초심사일자: 2023년 9월 6일 ■ 게재확정일자: 2023년 9월 12일

■ 정보관리학회지, 40(3), 119-142, 2023. <http://dx.doi.org/10.3743/KOSIM.2023.40.3.119>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여는 말

한때 안방도서관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도서관이 소장한 방대한 자료를 내 집 안방에서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곧 열린다는 꽤 달콤한 수사였다. 디지털도서관은 20여 년 전, 이런 희망찬 기대 속에서 등장했다. 그렇지만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도서관 자체를 읽을 수 있으리라는 비전은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주요 도서관들은 꽤 많은 도서를 디지털화했고, 목록뿐만 아니라 도서의 본문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가운데 일부는 정말로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도서보다는 도서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도서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여전한 현실이다. 주변의 가까운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껏해야 그동안의 진전이라면 진전이다. 생성형 AI가 눈앞에서 소설을 써내고, 그림을 그려내는 오늘에도 안방도서관은 여전히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다. 디지털화된 도서들은 도서관 담장을 넘지 못한 채 꼭꼭 갇혀 있다.

그 진전이 기대보다 이렇게 더딘 까닭은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은 저작물을 대량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작물마다 개별적으로 권리 처리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그동안 저작권법을 몇 차례 개정하면서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저작권은 여전히 안방도서관을 실현

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홍재현(1999; 2000; 2002)은 초창기 디지털도서관이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하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면책의 주요한 요건을 분석하여 정리했다. 정경희(2014; 2015; 2016)는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법정허락제도가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호신과 정경희(2020)는 저작권법에 새로 도입된 저작권법 제 35조의 4를 적극 활용해서 디지털도서관 구축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는 저작권법 관련 조문에 대한 해석과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디지털도서관에서 저작권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디지털도서관의 진전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저작권 처리의 어려움으로 모두 전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제한된 틀 속에서도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그 해결의 실마리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우선 주목했다.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통로로써,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 유용한 돌파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를 함

게 제시한다(정경희, 이호신, 2017, 10-13).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이다. 저작권은 일정한 기간만 보호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유형물에 부여되는 소유권과는 구별된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공유 영역)에 해당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보호기간 중에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서 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보호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여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임원선, 2022, 176).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 있어서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도서관들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을까?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를 점검한 연구는 아직껏 이루어진 바 없다. 이 연구는 도서관 실무에서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아울러 이와 함께 제기되는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제한된 범위 속에서도 그 서비스를 확장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서, 먼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들을 망라하여 정리한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세 명의 작가

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의 사례를 세밀하게 훑아보면서,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활용의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이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는지, 디지털화 작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 서비스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목록에 기재된 데이터에 의존해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록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반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디지털 저작물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샘플링하여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전체적인 현황을 보여주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다만 매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미루어 짐작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도서관의 저작물 서비스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다(정경희, 이호신, 2017, 13). 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재

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¹⁾ 이런 까닭에 디지털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는 저작권법의 규정이나 라이선스의 내용에 따라 그 범위와 방법이 달라진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에 제약이 있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권리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지금부터 저작권법의 규정이나 관련 라이선스에 따라 디지털도서관이 저작물을 서비스하는 범위와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 한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등 이용 방법에 아무런 제약 없이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저작물을 도서관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 도서관 외부로 전송할 수도 있다.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장소에 아무런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도서관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저작권법 제7조가 규정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저작권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도 아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둘째, 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자유이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저작권법 제3관(제39조~제44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된다.²⁾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작권 보호기간

-
- 1)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재산적인 측면에서의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 등 거래와 이전(移轉)의 대상이 된다. 이런 까닭에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나면, 저작자는 더 이상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저작자가 아니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있다고 표현해야 한다.
 - 2) 현행법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었으나,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하여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2023년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것이다.

은 만료되고,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는 조금 달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정한 제약 조건을 준수해야만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저작권법 제2관(제23조~제38조)에는 공익적인 취지 등에서 그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법률이 정하는 매우 까다롭고 상세한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제31조와 제35조의 4는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이다.

제31조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대한 규율이다.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이다. 제2항은 도서관 관내에서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 제3항은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하는 경우, 제4항은 디지털 복제에 대해서, 제5항 및 제6항은 저작물의 전송에 따르는 보상금에 관한 내용, 제7항은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도서관 등의 의무를, 제8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보존을 위한 수집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율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대부분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저작재산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보관된 도서 등을 디지털화해서 도서관 관내와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는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이 조항을 적용해서 2000년 이후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이 허용하는 저작물의 이용은 도서관의 담장을 벗어날 수 없다. 도서관 관내와 다른 도서관의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전송과 도서관간 전송만 허용된다.

제35조의 4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현재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저작권자 또는 그의 거소를 파악할 수 없는 '권리자 불명 저작물(orphan works)'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권리자불명 저작물'임이 확인되면 문화시설은 해당 저작물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가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는 장소를 도서관 내부로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이 조항은 전송의 범위를 특정한 공간 내부로 제한하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추후에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나면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이용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이호신, 정경희, 2020).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얻은 후에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도서관과 저작재산권자 등이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이 바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의 일종이다.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역은 달라진다. 현재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 주로 활용되는 라이선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나 공공누리와 같은 자유이용허락 표시 저작물이다. 이 라이선스는 저작물을 공표하면서 저작자가 그 이용 조건을 미리 저작물에 표시한 것이다.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자가 미리 제시한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CCL은 저작자 표시, 영리 목적 이용 허락 여부, 저작물의 변경 허용 여부, 동일 조건 이용 허락 등 네 가지 이용 조건을 결합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공공누리도 저작자 표시, 영리 목적 허용 여부, 저작물에 대한 변경 허용 여부 등 세 가지 조건을 조합한 네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라이선스의 모든 유형들은 저작물 이용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제약을 따로 부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선스가 부착된 모든 저작물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 관외로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다. 관외 전송은 물론이고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둘째,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취득한 조건과 범위 내에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다. 전자책과 오디오북, 학술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디지털 형태

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대부분의 저작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저작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판매처와 도서관이 체결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이 결정된다. 이용의 조건과 범위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저작권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용의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관내에서의 이용만을 허용할 것인지, 다른 도서관에서의 이용을 허락할 것인지, 도서관 외부의 장소에서의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 제한적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등 이용에 따르는 세세한 조건을 저작재산권자가 결정하고, 도서관은 그 약정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표 1〉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정리한 것이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방법이나 장소에 아무런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저작권 제한의 경우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조건으로 그 이용 방법과 범위가 제한된다. 예컨대 제31조를 적용하면 관간전송은 해당 도서가 발행 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만 제한적으

〈표 1〉 디지털도서관 저작물 서비스의 근거와 방법

	적용 대상	이용의 근거	관내전송	관간전송	관외전송	다운로드
자유이용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7조	0	0	0	0
	정부저작물	제24조 제1항	0	0	0	0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제39조	0	0	0	0
저작권 제한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	제31조	0	O/X	X	X
	문화시설에 보관된 '권리자 불명 저작물'	제35조의 4	0	0	0	X
허락된 이용	자유 이용허락 표시	CCL, 공공누리	0	0	0	0
	상업적 이용 라이선스	계약	O/X	O/X	O/X	O/X

로 허용되고, 발행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도서 등은 자관내로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된다. 상업적 이용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계약의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저마다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나 저작물 이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용자에게 다운로드를 허용할 수도 있으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2.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저작권법 제39조에서 제44조는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이다. 토지나 건물 등의 유형적인 재산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제한된 기간 동안 존속하는 권리이다. 저작물은 무체물로서 마모나 소실되지 않으므로 일반 재산권과 같이 권리의 대상이 존속하는 때까지 보호를 부여한다면 그 보호가 실질적으로 영속화될 수 있다(임원선, 2022, 175).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영구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그 이후에는 저작물이 공유(public domain) 상태에 놓이도록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이다(박성호, 2017, 640).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법률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이다. 제2항에서는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저작자 가운데 가장 나중에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권리가 존속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이전 법률에서는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저작재산권을 보호하였으나, 2012년 한-EU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법률 개정에서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그렇지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하여 이미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경우까지 권리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정경희, 이호신, 2017, 122). 따라서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아직 저작자 사후 70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공유 영역에 해당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누구의 허락 없이도 해당 저작물을 출판물로 발간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전송할 수 있다. 출판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저자들의 저작물을 도서로 재출판하여 판매하고 있다. 비단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면서 만료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자의 저작물을 활용해서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출판된 도서 가운데에는 그 구성과 편찬 과정에서 관여하는 또 다른 저자의 역할에 따라서 자유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해당 도서에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거나, 수록할 작품을 선별하거나 배열하는 과정에서 편저자나 출판사가 수행한 역할에 따라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에서는 도서의 판면

(版面)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 출판 자체에 대해서 출판사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작물에 기재된 옛 표현을 최근의 문법이나 어법에 맞추어서 약간의 변형을 가하거나 작품에 대한 해설 등 별도의 저작물을 추가하면서 자신들이 저작권 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저작물의 표현에 대한 일부 수정이나 작품을 선택하는 행위만으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주장에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상 작가의 작품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해설이나 비평 등이 새로운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약간의 변형이나 수록 작품의 선별과 같은 부분적인 역할의 수행만으로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나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는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저작재산권 자체를 영속화하려는 것이어서 보호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연구의 방법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복제나 전송 등 이용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 얼마나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까?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를 통해서 그 실재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표본을 통해서 그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단면을 세밀하게 훑아보려고 한다. 미시적이지만 심층적인 단면을 통해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대체적인 윤곽을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동했던 근대 문인 세 명의 작품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으로 선정한 작가는 김유정,³⁾ 이효석,⁴⁾ 채만식⁵⁾이다. 이들은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1937년, 1942년, 1950년에 각각 사망하여 모두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고, 모두 한국문학사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들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들의 작품 상당수가 수록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작가들이다. 그런 만큼 이들

3) 김유정(金裕貞, 1908-1937)은 1908년 1월생으로 강원도 춘천 출신의 소설가이다. <동백꽃>, <봄봄>, <따라지> 등 30여 편의 단편소설과 10여 편의 소설을 발표하였다(권영민, 1990).

4) 이효석(李孝石, 1907~1942)은 강원도 평창 출신의 소설가이다. 1907년 2월 23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출생하였으며, 1928년 조선지광에 <도시와 유령>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1934년부터 숭실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1942년 5월 25일 사망하였다. <메밀꽃 필무렵>은 그의 대표작이다(권영민, 1990).

5) 채만식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소설가로, 1902년 전라북도 옥구에서 출생하였다. 1924년 조선문단에 발표한 단편 <세 길로>를 통해서 문단에 데뷔하였고, 이후 <태평천하>, <탁류> 등의 장편소설을 발표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 무렵에 사망하였다(권영민, 1990).

의 작품을 수록한 출판물들이 많다는 점도 함께 감안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들 작품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6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에서 “저자명”에 해당 작가의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 결과를 얻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원문이 제공되는 것으로 검색의 결과를 제한하여 다시 새로운 검색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 가운데 동명이인의 저작물을 비롯하여 부정확한 값을 제외한 1,469건(김유정 289건, 이효석 589건, 채만식 611건)의 결과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2>는 대상 작가와 분석 데이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조사 대상 데이터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아울러 작가별/발행년도별 현황을 정리하였다. 해당 작가의 저작권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수록하고 있는 도서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서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묶어 놓은 선집의 경우에는 해당 작가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뿐만 아니라 함께 수록된 또 다른 저자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서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해당 도서가 어떤 유형의 저작물인가를 구분하고, 해당 도서의 저작권재산권자의 유형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 데이터 가운데 해당 작가의 대표작이 얼마나 중복 포함되어 있는가도 함께 점검하였다.

4. 국립중앙도서관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 사례 분석

4.1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원문의 서비스 유형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원문의 서비스는 <관외이용(무료)>, <국립중앙도서관(무료)>, <국립중앙도서관·협약도서관(인쇄시 과금)>, <국립중앙도서관·협약도서관(열람, 인쇄시 과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무료)>, <국립중앙도서관(정기이용증소지자 무료)>,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무료)> 이렇게 7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 제공 방법이 이처럼 다양한 까닭은 저작권법과 라이선스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물이 가진 이용 조건에 따라 디지털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와 보상금 부과 여부가 달리 적용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각각의 원문 서비스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표 2> 조사 대상 작가와 분석 데이터 현황

작가	출생년도	사망년도	대표작	분석대상 데이터
김유정	1908	1937	<봄봄>, <동백꽃> 등	289
이효석	1907	1942	<메밀꽃 필무렵>	569
채만식	1902	1950	<태평천하>, <탁류>	611

요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관외이용(무료)〉는 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이나 관외 전송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저작권법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법 제7조에 따라 아예 저작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법령, 판결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을 확보한 저작물, 법 제35조의 4에 따르는 권리자불명 저작물, 저작권법 제3관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등이 그 대상이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저작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관외 전송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와 CCL이나 공공누리 라이선스와 같이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 이용 조건을 저작물에 표기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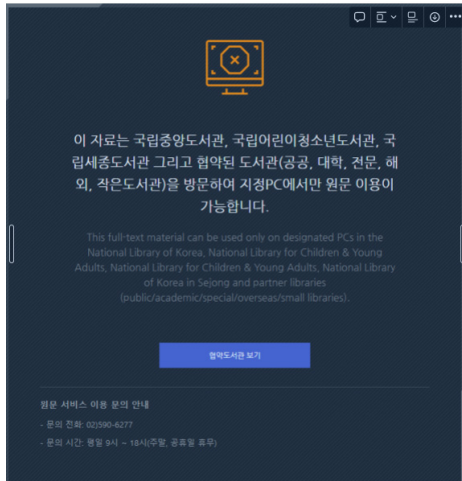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무료)〉는 법 제31조 제2항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복제와 관내 전송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관내에서만 디지털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방법이다.⁶⁾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한 저작물 가운데 발행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31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도서관에 해당 도서 등이 보관된 부수만큼으로 동시에 사용자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채 납본 등을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입수한 전자책이나 오디오북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협약도서관(인쇄시 과금)〉과 〈국립중앙도서관, 협약도서관(열람, 인쇄시 과금)〉은 모두 법 제31조 제3항과 제5항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도서관간 전송에 해당한다. 발행 후 5년이 경과한 저작물이 그 대상이 되고,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협약도서관의 지정 PC에서 디지털 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6-20호)에 따라 해당 도서가 판매용인가 비판매용인가에 따라 보상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국립중앙도서관, 협약도서관(인쇄시 과금)〉의 경우 저작물의 도서관 상호간 전송에 대해서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매용 단행본과 비매용 정기간행물이 대상이다. 〈국립중앙도서관, 협약도서관(열람, 인쇄시 과금)〉은 전송에 대해서 보상금을 부과하는 판매용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이 그 대상이다.⁷⁾ 〈그림 1〉은 실제 해당 자료를 도서관 외부에서 열람하기 위해서 클릭했을 때, 국립중앙도서관이 원문 이용 장소에 제약이 있음을 안내하는 화면이다.

6)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는 서비스를 무료라고 표기하고 있다. 도서관 관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한 저작물의 열람과 전송은 제31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열람한 저작물을 이용자가 출력하는 행위는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권법의 관련 내용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거나 표현상의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7) 보상금의 부과는 저작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은 법 제31조 제3항이 아니라 제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의 열람과 출력에 대한 보상금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저작물이 어느 곳에서 이용되었는가를 통해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한 분류라고 보인다.



〈그림 1〉 원문 이용 장소 제약을 안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 화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무료)〉는 〈국립중앙도서관(무료)〉와 마찬가지로 법 제31조 제2항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복제와 관내 전송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관내에서만 디지털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방법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직제에 포함된 하부 조직이지만, 국립중앙도서관과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법률 해석상 별도의 도서관에 해당한다. 이러한 까닭에 이 부분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정기이용증소지자 무료)〉,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무료)〉는 자료의 구입이나 입수 과정에서 관련 도서관들이 체결한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부연한 원문 이용 방법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 연구를 위해서 수행한 조사의 결과값에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분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관

외이용,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협약도서관(인쇄시 과금), 국립중앙도서관·협약도서관(열람, 인쇄시 과금)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제공되는 저작물 현황을 파악하였다. 〈표 3〉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원문을 제공하는 네 가지 유형의 대상저작물과 법률상의 근거와 요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4.2 서비스 유형별 저작물 현황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은 모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자이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이 작가들의 디지털 원문 가운데 관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1,469건의 약 7%에 해당하는 93건에 불과했다. 김유정과 이효석이 각각 37건, 채만식의 저작이 19건에 해당하여 총 79건을 도서관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관외 전송이 가능한 자료에는 작가의 개별 저서뿐만 아니라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수록된 도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김유정의 경우에는 〈산골나그네〉, 〈봄봄〉, 〈동백꽃〉, 〈노다지〉라는 제목의 단편소설 선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문학전집〉, 〈탈출기〉와 같은 제목의 다른 작가의 작품을 한데 모아서 엮은 도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효석의 경우 〈이효석 전집〉을 비롯하여 〈메밀꽃 필 무렵〉, 〈화분(花粉)〉, 〈노령근혜〉 등 작가 개인의 단편소설 선집과 수필집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문학전집〉 등과 같이 다른 작가의 작품과 함께 엮은 도서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채만식의 경우 〈탁류〉, 〈태평천하〉와 같은 장편소설과 〈레디메이드 인생〉과 같은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3〉 디지털 원문 제공 유형과 법적 근거

	제공 방법	대상 저작물	법적 근거와 요건
관외 전송	관외이용 (무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법 제3관 저작권재산권의 보호기간(제39조~제44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	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1항 (저작권재산권 확보)
		권리자불명 저작물	법 제35조의 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상당한 조사를 통해 권리자 불명 확정
		관외 전송 라이선스 취득 자유이용허락표시	개별 라이선스 계약 CCL,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 표시
관내 전송	국립중앙도서관 (무료)	전자책, 오디오북 등 납본을 통해 입수한 디지털 저작물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한 저작물	법 제31조 제2항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 발행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동시 이용자를 소장하고 있는 부수만큼으로 제한하 여야 함
도서 관 상 호간 전송	국립중앙도서관· 협약도서관 (인쇄시 과금)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한 저작물 가운데 발행 후 5년이 지난 비판매용 단행본, 정기간행물	법 제31조 제3항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
	국립중앙도서관· 협약도서관 (열람, 인쇄시 과금)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한 저작물 가운데 발행 후 5년이 지난 판매용 단행본, 정기간행물	법 제31조 제3항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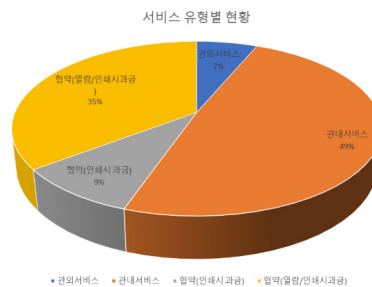
1,469건 가운데 협약도서관의 지정 PC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간 전송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44%에 해당했다. 출력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부과하는 도서는 김유정 36건, 이효석 28건, 채만식 73건으로 전체의 9%에 해당하였다. 열람과 출력에 대해서 보상금을 부과하는 도서는 김유정 146건, 이효석 188건, 채만식 18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김유정 70건, 이효석 316건, 채만식 334건으로 전체의 49%에 해당했다. 〈표 4〉는 세 명의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원문 서비스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2〉는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유형별로 도식화한 것이다.

〈표 4〉 작가별 원문서비스의 유형별 현황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
관외이용	37	37	19
국립중앙도서관, 협약도서관 (인쇄시 과금)	36	28	73
국립중앙도서관, 협약도서관 (열람/인쇄시 과금)	146	188	185
국립중앙도서관	70	316	334
계	289	569	611



〈그림 2〉 서비스 유형별 현황

언뜻 살펴보았을 때, 관외전송, 관간전송(인쇄시 과금, 열람 및 인쇄시 과금), 관내이용을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상 자료의 도서 유형과 저작재산권자의 유형 그리고 발행년과 발행처 유형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4.3 도서의 유형과 저작재산권자의 유형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상 도서에 다른 저작자나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도서에 따라 다른 저작자의 작품이 수록되었거나 각색자나 번역자와 같은 또 다른 역할의 저작자가 존재할 수 있다. 한편 오디오북의 경우 저작물을 낭독한 실연자가 존재한다. 도서에 수록된 모든 저작자나 권리자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야 자유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권리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해당 도서를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실연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가 존재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권리 만료 여부에 따라 서비스의 범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대상 작가들의 디지털 저작물 가운데 관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전체의 7%에 불과한 것은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까닭일 것이다.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데이터에 포함된 도서의 유형과 권리자 유형을 함께 분석하였다.

조사 데이터에는 다양한 유형의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 작가의 작품을 한 데 엮어서 수록한 작품 선집, 작가 개인의 작품 가운데

대표작을 선별해서 수록한 개인 작품 선집, 작가의 장편소설 등을 수록한 단행본, 작품 전집, 오디오북 등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해당 작가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문인들의 작품이나 유사한 주제나 소재를 가진 작품을 편집해서 수록한 작품 선집은 김유정 137건, 이효석 153건, 채만식 137건이 검색되어 총 427건에 해당하였다. 대상 작가 개인의 작품을 선별해서 수록한 단일 저자의 작품 선집은 김유정 95건, 이효석 316건, 채만식 288건으로 총 700건에 해당하였다. 장편소설과 개인 전집은 이효석과 채만식에게서 장편소설 24건, 110건 그리고 개인 전집은 작가별로 1건, 3건, 5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디오북은 유명 인사나 성우가 작품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콘텐츠로 김유정 54건, 이효석 73건, 채만식 71건을 포함해서 198건이 확인되었다. 기타 2건은 공연대본으로 김유정의 소설을 각색한 공연대본이었다. <표 5>는 도서의 유형별 데이터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도서의 유형에 따라 해당 도서의 저작자는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장편소설이나 개인 전집의 경우에는 대상 작가 이외의 다른 저작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작품 선집은 해당 작가 이외의 또 다른 작가, 엮은이, 해설이나 논평을 작성한 평론가가 저작자로 목록상에 함께 수록되기도 했다. 해당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수록한 경우 번역자가 저작자로 표기되기도 했다. 오디오북의 경우에는 작가 이외에 낭독을 담당한 실연자의 이름도 목록상에 저작자로 함께 표기되었다.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2편의 저작물은 김유정의 작품을 각색해서 작성한 공연대본으로, 각색자의 이름이 함께 표기되어

〈표 5〉 도서의 유형별 현황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	계
여러 작가의 작품 선집	137	153	137	427
개인 작품 선집	95	316	288	699
장편소설	0	24	110	134
개인전집	1	3	5	9
오디오북	54	73	71	198
기타	2	0	0	2
계	289	569	611	1,469

있었다. 한편 해설이나 논평 작성자의 이름이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작가의 저작물이 수록된 경우, 해당 작가들은 모두 저작물의 저작자가 된다. 위은이의 경우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번역과 각색은 대상 작가의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원작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한다. 해설이나 논평은 작가의 작품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저작물이고, 해설이나 논평의 저작자에게 별도의 저작권이 부여된다. 오디오북의 경우에는 저작자 이외에 낭독한 사람에게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발생한다.

이처럼 해당 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유형의 권리가 존

재하고, 이에 따르는 저작권 문제도 조금씩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단독 저작인 도서의 경우에는 또 다른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함께 포함된 도서의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목록상에 나타난 권리를 확인하여 저작자의 유형을 저작권법의 구분에 따라 단독저작물, 편집저작물, 결합저작물, 2차적 저작물, 실연물로 각각 구분하였다. 〈표 6〉은 그 현황을 작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단독저작물은 김유정 60건, 이효석 284건, 채만식 342건으로 전체 데이터의 약 47%에 해당하는 686건이었다. 저작자의 보호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고, 제3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도 아

〈표 6〉 권리의 유형에 따른 저작물 유형과 보호기간 만료 여부

보호기간	저작물 유형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	계	
만료	단독저작물	60	284	342	686	
확인 필요	결합저작물	동일 유형	135	168	155	458
		다른 유형	15	20	15	50
		소계	150	188	170	508
미완료	편집저작물	20	26	26	72	
	2차적 저작물	5	0	2	7	
	실연물	54	71	71	196	
계		289	569	611	1,469	

니기 때문에 이 도서들은 모두 관외 전송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무방한 것들이다. 이것은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관외 전송의 방법으로 서비스하는 79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수치이다.

대상 도서 가운데 동일한 유형의 저작자들의 작품을 수록한 작품 선집과 서로 다른 유형의 저작자의 저작물을 함께 수록한 경우를 결합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다. 결합저작물은 여러 명의 저작자가 함께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를 일컫는다(오승중, 2020, 348). 결합저작물은 저작권법의 공동저작물('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21호)과 구별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은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결합저작물은 개별 저작물의 집합이기 때문에 저작물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과는 구별이 된다. 권리의 행사와 보호기간의 산정도 저작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대상 도서들에 수록된 여러 작가의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소개 또는 해설 등은 모두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저작물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이 도서들은 모두 결합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다. 김유정 150건, 이효석 188건, 채만식 170건으로 전체 데이터의 35%에 해당하는 508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합저작물은 저작물별로 저작권자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보호기간도 각각 상이하다. 해당 도서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는 도서에 수록된 개별 저작물을 일일이 확인해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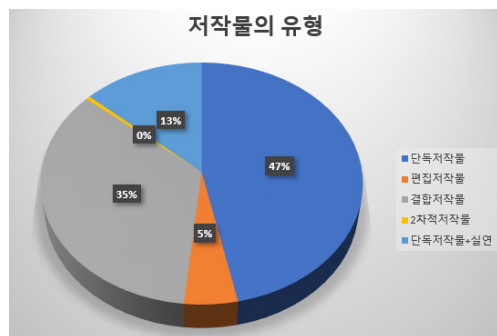
한편 대상 자료 가운데 엮은이를 저자로 표기한 저작물은 편집저작물로 구분하였다. 엮은이의 이름이 표기된 도서를 정리한 것으로, 김유정 20건, 이효석과 채만식 각각 26건, 총 72건의 도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목록상에 엮은이나 편저자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만을 편집저작물로 분류하였으나, 실제로 작품 선집의 형태로 발행된 모든 도서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도서가 법이 인정하는 편집저작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와 편저자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나에 따라서 권리의 내용이 달라진다.

대상 자료 가운데에는 소설을 각색하여 공연대본으로 작성한 경우와 외국어로 번역한 작품 7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작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와는 무관하게 이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 발생한다. 7건 모두 아직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이 경우 디지털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다면 법 제31조 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대상 도서 목록 가운데에는 오디오북 196건도 포함되어 있다. 오디오북은 텍스트 이외에 유명 인사나 성우의 육성으로 낭독된 음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콘텐츠이다. 이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어도, 낭독자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오디오북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디지털화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는 저작물을 납본 등의 방법으로 입수한 것이다. 따라서 관외 전송이나 관간 전송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고, 국립중앙도서

관의 관내에서 제한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은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대상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자료 가운데 47%는 관외 전송 등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단독저작물이다. 또한 결합저작물 35% 가운데에는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저작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편집저작물로 분류한 5%도 실제로 편집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저작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림 3〉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저작물의 구분

4.4 발행년에 따른 서비스 유형

법 제31조 제3항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이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서관간 전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의 발행년은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저작물을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2017년도 이후에 발행된 도서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발행년도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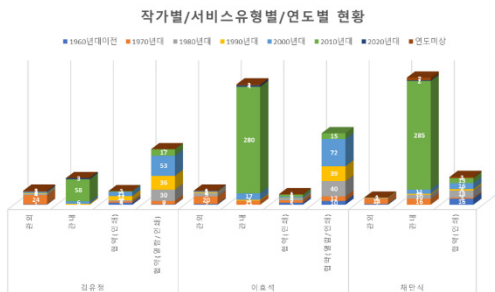
한 분석을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저작물이 어느 시점에 발행된 것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이전에 발행된 경우는 51건, 1970년대 129건, 1980년대 147건, 1990년대 161건, 2000년대 263건, 2010년대 692건, 2020년대 10건이다. 법의 기준에 따르면 2017년 이전에 발행된 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관내로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730건 가운데 2017년 이후에 발행된 도서는 김유정 27건(오디오북 2건 포함), 이효석 139건(오디오북 50건 포함), 채만식 117건(오디오북 33건 포함)에 해당한다. 해당 도서에 별도의 저작권산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발행연도와 상관없이 관외전송을 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권리자(저작권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등)가 존재한다고 해도 2017년 이전에 발행된 도서 등의 경우에도 또 다른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도서관간 전송 또는 관외 전송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730건 가운데 2017년 이전에 발행된 447건은 도서관간 전송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표 7〉은 세 명의 작가의 저작물의 발행연도별 서비스 제공 현황이고, 〈그림 4〉와 〈그림 5〉는 관련 현황을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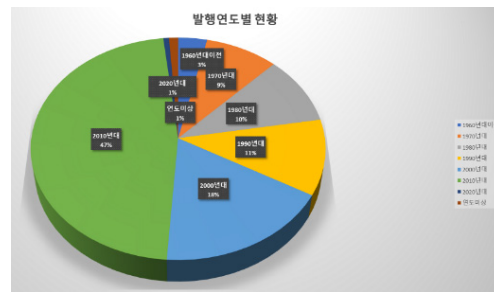
한 가지 주목해서 살펴야 할 점은 디지털 저작물이 2010년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목록을 개별적으로 검색하면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전자책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표 7〉 발행연도별/작가별/서비스 유형별 현황

발행연도별	작가별	관외전송	관간전송(1)	관간전송(2)	관내이용	계
1960년대 이전	김유정	1	5	1	-	7
	이효석	2	5	10	-	17
	채만식	2	16	9	-	27
	소계	5	26	20	-	51
1970년대	김유정	24	4	9	-	37
	이효석	20	7	12	11	50
	채만식	14	3	9	16	42
	소계	58	14	30	27	129
1980년대	김유정	4	3	30	-	37
	이효석	9	5	40	-	54
	채만식	2	18	26	10	56
	소계	15	26	96	10	147
1990년대	김유정	2	11	36	3	52
	이효석	2	1	39	2	44
	채만식	1	4	57	3	65
	소계	5	16	132	8	161
2000년대	김유정	3	11	53	6	73
	이효석	3	3	72	17	95
	채만식	-	16	68	11	95
	소계	6	30	193	34	263
2010년대	김유정	-	2	17	58	77
	이효석	-	6	15	280	301
	채만식	-	13	16	285	314
	소계	-	21	48	623	692
2020년대	김유정	1	-	-	3	4
	이효석	-	-	-	4	4
	채만식	-	-	-	2	2
	소계	1	-	-	9	10
발행년 미상	김유정	2	-	-	-	2
	이효석	1	1	-	2	4
	채만식	-	3	-	7	10
	소계	3	4	-	9	16
계		93	137	519	730	1,469



〈그림 4〉 작가별/서비스유형별/발행연도 현황



〈그림 5〉 발행연도별 현황

전자책을 별도의 유형으로 목록에 표시하고 있지 않아서 디지털 저작물 가운데 전자책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전자책 출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 들어 관련 출판물의 수가 급증한 까닭에 이 시기에 발행된 디지털 저작물이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디지털 저작물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2010년대에 발행된 출판물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이들 도서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자책에 해당 작가 이외의 또 다른 저작재산권자가 포함되지 않는 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해당해서 권외 전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출판사들이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출판물을 자유롭게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5 발행처의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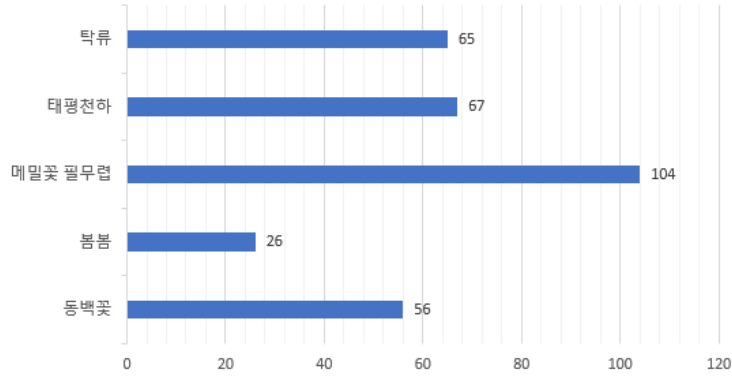
저작물의 발행처는 도서관간 전송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송에 대한 보상금을 부과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서비스 제공 방법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협약도서관(인쇄시 과금)〉과 〈국립중앙도서관, 협약도서관(열람/인쇄시 과금)〉은 대상 도서가 판매용인가 비판매용인가에 따라 서비스 방법을 달리 적용한 것이다. 이 기준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상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발행처가 상업출판사인 경우 판매용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이다. 반면에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발행처인 경우라면 판매용일 가능성보다는 비판매용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상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도서는 상업출판사가 발행한 것이어서 분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어떤 기준으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대상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4.6 작가별 대표 작품의 중복 디지털화와 서비스 현황

대상 도서의 목록을 살펴보면 동일한 작품을 수록한 도서들이 매우 중복해서 출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상 작가들의 저작재산권이 이미 오래전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었다는 까닭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도서에 수록된 동일한 작품들이 도서관에서도 중복해서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데이터 가운데 제목이 해당 저자의 작품으로 시작되는 도서만을 확인해 본 결과 김유정의 〈동백꽃〉 56건, 〈봄봄〉 26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104건, 채만식의 〈태평천하〉 67건, 〈탁류〉 65건이 각각 디지털 원문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실제로 수록 작품을 대상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상업출판사들이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형태로 새롭게 발행한 것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상당 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디지털화한 것이라

작가별 대표작 디지털저작물 제공 현황



〈그림 6〉 작가별 대표작의 디지털저작물 제공 현황

는 점은 틀리지 않는다. 동일한 저작물을 이렇게 중복해서 디지털화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5. 닫는 말: 논의와 제언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저작물 서비스 기준은 관련 법률과 라이선스 등을 근거로 비교적 적절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 적용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디지털저작물의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도서관 관내 또는 도서관간 전송으로 이용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관간 전송이 가능한 저작물을 관내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또한 보상금 부과 대상을 부적절하게 제시해서 부당한 과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관외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저작물은 조사 결과의 7%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 가운데 단독저작물에 해당하는 47%는 관외전송을 제공한다고 해도 아무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35% 가운데 상당 부분도 관외전송이 가능한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결합저작물의 경우에는 보다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제외해도 관외전송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수량을 이미 꽤 많이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를 통해서 관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저작물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는 단독저작물이 47%이고, 나머지가 53%(결합저작물 35%, 편집저작물 5%, 실연물 13%)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자의 저작권 만료 유무에 따라서 간단하게 저작권 문제를 정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저자나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자나 권리자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진다.

결합저작물은 여러 저작자의 저작물을 물리적으로 한데 묶어 놓은 도서 등을 지칭한다. 결합저작물은 저작자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해서 독립적인 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과는 구별된다. 공동저작물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위해서는 공동저작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저작권 보호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에 결합저작물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의 산정이나 권리 처리는 모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결합저작물은 실제로 개별 저작물의 물리적인 결합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의 저작물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는 저작물이 아니라 도서를 단위로 이루어진다. 디지털화한 도서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자가 단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저작물의 이용에는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의 저작물은 관외 전송할 수 있지만, 대상 도서에 함께 포함된 다른 저작자의 저작권으로 인하여 관외전송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합저작물의 저작권 처리를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처리와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도서관의 디지털 저작물 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도서를 단위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일한 작품을 중복해서 디지털화하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해당 작품이 아무리 문학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해도 수십 번씩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까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또 다른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편집저작물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도 살펴볼 문제가 있다. 조사 자료 가운데 편저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72건은 편집저작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작가 개인의 작품 선집이나 여러 작가의 작품 선집 등 1,326건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을 “편집물(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법 제2조 제17호, 제18호)이라고 정의한다. 편집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에 있어서 창작성을 갖추어야 한다. 소재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그 선택·배열·구성 of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편저자에게 별도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선집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작품을 선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선별 행위가 저작권법이 정의하는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도 11985판결). 따라서 편집물의 위은이가 반드시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편집 행위 자체가 창작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김유정이나 이효석의 작품을 선별해서 수록한 도서가 편집저작물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대상 도서들은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일부를 수록한 것에 불과해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만일 이러한 도서들을 편집저작물로 인정한다면 수록 작품들을 조금씩 바꿔 가면서 출판사들이 저작권을 영구화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선집들을 모두 편집저작물로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단순한 작품 선별을 넘어서 보다 기획적인 요소와 엄격한 작품 선별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합당하다. 출판사들이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도서로 출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온라인서비스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전자책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전자책은 DRM과 같은 기술적 장치를 활용해서 열람과 대출을 통제하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영구화하면서 작품에 대한 입을 권리 자체를 독점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다.

결합저작물의 공동저작물화, 동일한 작품에 대한 디지털화의 심각한 중복, 편집저작물로서의 인정 여부 등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서 단위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를 저작물 단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작업의 방식을 이렇게 바꾸면, 저작물 단위로 저작권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서 다른 저작자의 저작권 문제와는 상관없이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저작물을 중복해서 디지털화하는 경우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편집물의 저작물 여부와 같은 다품의 여지가 있고, 판단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을 피해 갈 수 있다.

아울러 도서의 저작권과 관련되는 정보를 도서관 목록데이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도 있다. 도서관의 목록 데이터는 저작권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여부를 파악하고,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목록 데이터는 필수적이다. 도서관의 목록 데이터를 통해서 저작자의 생몰년과 같은 저작권 관리를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서비스에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의 범위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누락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데이터와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주요한 문인이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목록데이터와 연동하는 작업은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작가들에 대한 보호기간 관리만으로도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상당한 확충이 가능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작물의 디지털화에는 많은 비용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 필수적인 저작권 관리에는 그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문 인

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복잡다단한 저작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서관 내에서 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을 양성할 필요가 매우 절실하다.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통해서 보호기간 만료저작물뿐만 아니라 판매 등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라이선스 등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을 비롯한 저작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활용 과정에서 실제 도서관이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실무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는 도서 내에 포함된 다른 저작자의 권리

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화와 서비스의 단위를 기존의 도서 중심에서 저작물 단위를 중심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목록 데이터를 통한 체계적인 저작자의 생몰년 관리를 제안하였다. 그동안의 디지털도서관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연구가 법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무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렇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디지털 저작물 가운데 지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다만 세부적인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개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급성 정도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가 개선되고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영민 (1990). 한국근대문인대사전. 서울: 아세아문화사.
- 박성호 (2017). 저작권법. 제2판. 서울: 박영사.
- 오승중 (2020). 저작권법. 제5판. 서울: 박영사.
- 이호신, 정경희 (2020). 도서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저작물 디지털 서비스의 가능성: 저작권법 제35조의 4의 주요 내용과 한계에 대한 검토. 정보관리학회지, 37(3), 107-131.
<https://doi.org/10.3743/kosim.2020.37.3.107>
- 임원선 (2022).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7판.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경희 (2014). 도서관 보상금 체제에서 고아저작물 체제로의 전환 모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 193-2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4.193>
- 정경희 (2015).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265-288.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4.265>
- 정경희 (2016).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상당한 노력'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333-350.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4.333>
- 정경희, 이호신 (2017).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파주: 한울아카데미.
- 홍재현 (1999).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도서관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정보관리학회지*, 16(1), 34-48.
- 홍재현 (2000). 디지털도서관의 저작물 전송 활성화 방안: 저작권과 관련한 제도적,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1(1), 67-92.
- 홍재현 (2002).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을 위한 저작권 연구. *정보관리연구*, 33(4), 57-84.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ong, Kyounghee & Lee, Hosin (2017). *Copyright for Librarian*. Paju: Hanwool Academy.
- Chong, Kyounghee (2014). A study on the transition from the library's copyright compensation regime to the orphan works regi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193-2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4.193>
- Chong, Kyounghee (2015). An analysis on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for library remuner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4), 265-288.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4.265>
- Chong, Kyounghee (2016).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onsiderable efforts' to use orphan works: focused on mass digitization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4), 333-350.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4.333>
- Hong, Jaehyun (1999). Issues of copyright relating to constructing and managing digital library in the internet ag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6(1), 34-48.
- Hong, Jaehyun (2000). A study on transmission of copyrighted works in digital library: the systematic and technological solutions relating to copyright.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1(1), 67-92.
- Hong, Jaehyun (2002). A study on copyright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33(4), 57-84.

Kwon, Youngmin (1990). Dictionary of Korean Modern Writer. Seoul: Aseamunwhasa.

Lee, Hosin & Choung, Kyounghee (2020). Possibility of transmission for works beyond library fence: review on the mai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ment, 37(3), 107-131.

<https://doi.org/10.3743/kosim.2020.37.3.107>

Lim, Wonsun (2022). Copyright for Practioner. 7th ed. Jinju: Korea Copyright Commission.

Oh, Seungjong (2020). Copyright Law. 5th ed. Seoul: Bakyoungsa.

Park, Sungho (2017) Copyright Law. 2nd ed. Seoul: Bakyoungsa.